

제2024-3호

기 관 경 고

기 관 명 : 전라남도 장성군

2024년 장성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지휘·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어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경고처분 하오니,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24. 6. 5.

전라남도지사



202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기관경고) 공개

◆ 2024. 3. 20. ~3. 28.(7일간) 전라남도 감사관실 16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2024년 장성군 정기종합 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전 라 남 도

징계 · 훈계 · 시정요구 · 기관경고 · 수사의뢰

제 목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업무 부당 처리

관계기관(부서) 장성군(○○○○과)

- 징 계 대 상 자 ① 장성군 ○○○○과 지방○○주사 ○○○
(중징계)
- ② 장성군 ○○○○과 지방○○주사 ○○○
(중징계)
- ③ 장성군 ○○○○과 지방○○주사보 ○○○
(경징계)

징 계 의 종 류 중징계, 경징계

- 훈 계 대 상 자 ① 장성군 ○○면 지방○○지도관 ○○○
(前 장성군 ○○○○센터 지방○○지도관)
- ② 장성군 ○○○○국 지방○○서기관 ○○○
- ③ 장성군 ○○읍 지방○○관 ○○○
(前 장성군 ○○○○과 지방○○사무관)
- ④ 장성군 ○○○○○실 지방○○사무관 ○○○
(前 장성군 ○○○○과 지방○○사무관)
- ⑤ 장성군 ○○○○과 지방○○사무관 ○○○
- ⑥ 장성군 ○○과 지방○○주사 ○○○
(前 장성군 ○○○○과 지방○○주사)
- ⑦ 장성군 ○○○○과 지방○○주사보 ○○○
- ⑧ 장성군 ○○○○과 지방○○서기보 ○○○

1. 업무개요

장성군은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15조 제4항에 따라 유기동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¹⁾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0. 12. 23.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위탁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와 2022. 1. 5. ‘2022 ~ 2023년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위탁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를 통해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위탁운영자로 ○○○를 선정, [표 1]과 같이 2021년부터 2024. 4. 3. 감사일 현재까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다.

[표 1]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현황(2021년~2023년)

(단위 : 두, 명, 천원)

연도	운영방식	보호센터명	대표자	일시수용 규모	운영인력	지원총액
계						641,846
2021년	민간위탁	○○유기동물보호소	○○○	100	2	103,250
2022년	민간위탁	○○유기동물보호소	○○○	250	4	176,946
2023년	민간위탁	○○유기동물보호소	○○○	250	6	288,250
2024년	(미선정)	(미선정)	(미선정)	(미선정)	(미선정)	73,400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은 2020. 7. 1.부터 2021. 7. 18.까지 ○○○○○과에서 201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3. 9. 6.부터 2024. 3. 28.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주사 ○○○은 2021. 7. 19.부터 2021. 10. 4.까지 ○○○○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2022. 1. 12.부터 2022. 9. 29.까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보 ○○○은 2023. 9. 25.부터 현재까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지방○○지도관 ○○○은 2020. 7. 1.부터 2022. 9. 29.까지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서기관 ○○○은 2023. 1. 1.

1)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같은 병원체에 의해 전파되고 증상이 발생하는 감염병

부터 2024. 3. 28. 감사일 현재까지 ○○○○과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관 ○○○는 2019. 7. 1.부터 2020. 12. 31.까지 ○○○○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사무관 ○○○는 2022. 1. 12.부터 2022. 9. 29.까지 ○○○○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사무관 ○○○은 2022. 9. 30.부터 2024. 3. 28. 감사일 현재까지 ○○○○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지방○○주사 ○○○은 2022. 9. 30.부터 2023. 9. 5.까지 ○○○○과에서 ○○○○팀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보 ○○○은 2022. 7. 25.까지 2022. 9. 29.까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서기보 ○○○은 2022. 9. 30.부터 2023. 4. 2.까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자격 없는 자와 민간위탁업무 추진

가. 동물보호 시설 및 인력 기준 부적합자 선정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군수는 유실·유기동물²⁾이나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군수는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³⁾을 위해 [별표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이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²⁾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중성화하여 방사한 고양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³⁾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동물의 반환 등,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5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 5)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며, 시설 및 인력 기준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20. 00. 00. 공고한 장성군 ○○○○센터 공고 제2020-00호 및 2020. 00. 00. 재공고한 장성군 ○○○○센터 공고 제2020-00호 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자 신청자격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은 「동물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시설·요건이 미흡할 경우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공고문의 제출서류 서식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따르면 첨부서류로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 자료,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4) 동물의 구조·보호실적 1부, 5) 사업계획서 1부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21-89호, 2021. 12. 8.) 제4조에 따르면 센터의 장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질병관리, 반환·분양 등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센터 운영자, 의사, 사무직 종사자, 유실·유기동물의 구조원 등을 고용하여야 하며, 의사는 질병 예찰·치료·관리, 교육, 인도적 처리 등 업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성군은 유기동물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제36조 등에 따라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 받아 적법한 건축물에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⁴⁾의 보호실과 격리실, 사료보관실 등을 구분하여 갖추고 있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센터 운영자를 비롯하여 수의사, 사무직 종사자, 구조원 등의 충분한 인력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야 하며, 만약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 확보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확보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성군(○○○○과)은 2020. 12. 23. 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심의회를 통해 적합 여부를 심의하면서 [표 2]와 같이 보호시설 전체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수의사를 고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당시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되어 있지 않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되지 못하는 개인(○○○)을 부적정하게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였고, 2022. 1. 5.에 심의한 2022년 ~ 2023년 위탁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시설과 인력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적합자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표 2] 동물보호법 시설 기준 부적합자 선정 명세

연도	신청인			시설기준 부합여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건축물등재	사육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2021	○○유기동물 보호소	○○○	○○면 ○○길 00-0 (○○리 000)	미등재 (불법건축물)	일부 부합 (확인불가)	없음 (미달)	없음 (미달)
2022 2023	○○유기동물 보호소	○○○	○○면 ○○길 00-0 (○○리 000)	미등재 (불법건축물)	30동 (미확인)	5동 (미확인)	1동 (미확인)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소형견 (5kg 미만): 50 × 70 × 60(cm) /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 고양이: 50 × 70 × 60(cm)

또한 2024. 4. 3. 감사일 현재 위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의 사업장 소재지(○○면 ○○리 000번지)에 대해 장성군 기본도시스템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그림]과 같이 해당 지번에 적법한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장성군 농지관리부서 확인 결과 ○○리 000번지와 000번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농지(전)⁵⁾로 「농지법」 제34조를 위반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장성군 ○○면 ○○리 000번지 토지정보 현황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협약서 체결업무 처리 부적정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서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르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장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6명 ~ 9명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0조에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

5)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약)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면 ○○리 000(0,000㎡, 전, 진흥박), 000(000㎡, 전, 진흥박) 2필지 모두 불법농지전용 확인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제58조 제2항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결하여야 하고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성군은 유기동물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제36조 등에 따라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6명 이상 9명 이하의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의무이행 등이 포함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성군(○○○○과)은 2020. 12. 23. ‘2021년 동물보호센터 위탁업체 선정 심의’와 2022. 1. 5. ‘2022년 ~ 2023년 동물보호센터 위탁업체 선정 심의’를 2차례 진행하면서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심사위원을 6명에서 9명이내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 3]과 같이 2020년에는 4명만, 2022년에는 3명만으로 부적정하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하였다.

[표 3]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부적정 구성 명세

심의일	심의위원 부적정 구성 명세				적법한 구성 규정
	총원	성명	소속	분야	
2020.12.23.	4명	○○○	장성군○○○회	동물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당해 전문가 6명 ~ 9명 (2명 부족)
		○○○	장성군청	내부공무원	
		○○○	장성군청	내부공무원	
		○○○	○○○○병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022.01.05.	3명	○○○	장성군○○○회	동물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당해 전문가 6명 ~ 9명 (3명 부족)
		○○○	장성군청	내부공무원	
		○○○	장성군청	내부공무원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장성군(○○○○과)은 2020. 12. 23.과 2022. 1. 5. 2차례에 걸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와 의무이행 등을 명시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동물보호센터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유기동물보호소와 민간위탁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아울러 장성군(○○○○과)의 2024년도 동물보호센터 지원사업 지출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4년도 동물보호센터 위탁업체 선정 심의’ 및 재위탁 협약 등의 조치 없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간위탁업체로 부적정하게 선정한 ○○유기동물보호소(대표 ○○○)에 2024. 4. 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총 73,4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있다.

3. 민간위탁사업 관리 소홀로 횡령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방지

가. 민간위탁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와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에 맞게 운영하며, 예산부서는 예산방침을 시달하고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에 대하여 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 의회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민간위탁금(307-05) 통계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성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민간위탁금(307-05) 통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성군(○○실, ○○○○과)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표 4]와 같이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부서인 ○○○○과에서 요구한 사무관리비가 세출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요구되었는지 산출근거까지 조정하여 심의·확정하여

야 하나, 수정요구 등의 조치없이 장성군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총 944,710,000원이 민간위탁금(307-05)이 아닌 사무관리비(201-01)로 부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부적정 명세(2021년~2024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 편성액			부적정 통계목	정당한 통계목
	계	도비	군비		
계	944,710	47,770	896,940	201-01 (사무관리비)	307-05 (민간위탁금)
2021년	115,250	5,250	110,000		
2022년	226,600	14,520	212,080		
2023년	312,080	16,000	296,080		
2024년	290,780	12,000	278,780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장성군(○○○○과)은 [표 4]와 같이 부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을 [표 5] 및 [별표 2]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 없이 부적정 집행 인건비 및 운영비 명세”와 같이 인건비, 운영비, 출장비 명목으로 수탁자(○○○) 등에게 사무관리비에서 4년간 총 60건⁶⁾ 641,846,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5] 사무관리비 등에서 부적정 집행된 명세(2021년~2024년)

(단위 : 건, 천원)

연도	예산 집행액							
	합계		인건비		운영비		출장비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0	641,846	38	381,400	11	195,946	11	64,500
2021년	19	103,250	12	48,000	4	42,500	3	12,750
2022년	19	176,946	12	105,600	3	50,496	4	20,850
2023년	18	288,250	12	194,400	3	72,950	3	20,900
2024년	4	73,400	2	33,400	1	30,000	1	10,000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장성군(○○○○과)은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동물보호센터 수탁자(○○○)에게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한 경비 목적으로 [표 5]와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면서도 [표 6]과 같이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비로 직접 집행해야 할

6) 인건비(38건) 지출 중 일부에 출장비(11건)을 포함하여 지출

포획틀과 사료 구입, 격리장 및 보호장비 구입 등을 사무관리비로 총 26회 27,150,020원을 지출, 직접 구입하여 중복 지원하였다.

또한 「농지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고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인 ○○면 ○○리 000번지 소재의 ○○유기동물보호소에 총 6회 35,328,000원을 투입하여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시설물 개보수, 정화조 설치, 전기공사 시행, 컨테이너 이송비 등을 부적정하게 지원하였다.

[표 6]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외 중복지원 의심 명세(2021년~2024년 3월)

(단위 : 건, 천원)

구분	합계		시설지원		소모품 및 운영비 등		사체처리비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5	80,949	6	35,328	26	27,150	13	18,471
2021년	9	36,376	3	29,960	6	6,416	-	-
2022년	13	12,084	-	-	11	11,328	2	756
2023년	20	29,403	3	5,368	8	7,518	9	16,517
2024년	3	3,086	-	-	1	1,888	2	1,198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나. 민간위탁사업 지휘·감독 및 정산검사 부적정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에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6조에 따르면 센터의 장은 인건비, 일반 운영비(전기·수도요금, 냉난방비, 물품비, 시설유지비 등), 보호관리비(약제비, 사료비, 사체처리비 등) 등을 필수항목으로 하는 동물보호센터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

성하여 생산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해 1월 말까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성군은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이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또한 장성군은 동물보호센터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며, 지휘·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장성군(○○○○과)은 동물보호센터 수탁자(○○○)가 [표 5] 및 [별표 2]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 없이 부적정 집행 인건비 및 운영비 명세”와 같이 2021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60건 641,846,000원을 지원받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면서 지출 증빙서류 일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부실하게 제출되었는데도 단 한 차례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하는 등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탁자(○○○) 등의 보조금 사적 사용 의심 거래 정황이 확인되었다.

특히 [별표 3]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목적으로 ○○○ 통장으로 지급된 입금 명세”와 같이 수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운영비 등이 [별표 4] “지출 증빙없이 운영비 사적 사용 의심 거래 명세(○○○)”, [별표 5] “지출 증빙없이 운영비 통장에서 본인 다른 통장으로 입금 후 사적 사용 의심 거래 명세(○○○)”, [별표 6] “지출 증빙없이 운영비 통장에서 ○○○ 통장으로 이체한 거래 명세(○○○)”와 같이 불명확한 사유로 동물보호센터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는 특정인(○○○)과 동물보호센터 위탁사무와 관련이 확인되지 않은 신원불명자들과 지속적으로 입·출금 거래가 되고 있고, [별표 7] “동물보호센터 출장비 등 목적으로 ○○○ 통장으로 입금된 거래 명세”와 같이 동물보호센터 직원인 ○○○ 명의 계좌로 입금

된 출장비 등도 [별표 8] “지출 증빙없이 출장비 등 사적 사용 의심 거래 명세(○○○)”, [별표 9] “지출 증빙없이 ○○○ 운영비 통장에서 이체된 보조금 사적 사용 의심 거래 명세(○○○)”, [별표 10] “○○○ 개인 통장에서 이체된 입금액 사적 사용 의심 거래 명세(○○○)” 와 같이 동물보호센터 위탁사무와 관련이 확인되지 않은 신원불명자들과 지속적으로 입·출금 거래가 되고 있는 등 출장비 등과 ○○○가 운영비 및 개인통장에서 입금한 금액도 수일 내에 거래사유가 불명확하게 특정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이 재이체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또한 장성군(○○○○과)은 [표 7]과 같이 동물보호센터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과 ○○○가 사단법인 ○○○○○○○○7(대표자 ○○○) 명의로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의 길고양이 포획 출장을 명목으로 2022년에 총 5차에 걸쳐 21,600,000원의 포획 출장비를 청구하였는데도 실제 포획 또는 중복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고, 소속 직원 ○○○과 ○○○은 감사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데도 중복 근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2021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10명에게 381,400,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수탁자(○○○)가 제출한 월별 출근부의 개인 확인도장만을 근거로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7] 동물보호지원사업 인건비 부정수급 의심 명세

(단위 : 천원)

인건비 지급대상	인건비 지급액					부정수급 의심 사유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0명	381,400	48,000	105,600	194,400	33,400	
○○○	97,200	24,000	31,200	36,000	6,000	
○○○	71,800	-	31,200	34,800	5,800	‘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사업 시 ○○○가 포획자로 (사)○○○ ○○○○ 포획비 26,400천원 수급
○○○	97,200	24,000	31,200	36,000	6,000	
○○○	35,000	-	-	30,000	5,000	
○○○	32,200	-	-	27,600	4,600	
○○○	35,000	-	-	30,000	5,000	
○○○	3,000	-	3,000	-	-	
○○○	5,000	-	5,000	-	-	직장 가입자
○○○	4,500	-	4,000	-	500	직장 가입자
○○○	500	-	-	-	500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승인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가 법인설립 허가요건에 따라 전라남도(○○○○과)로 제출한 2022년도 수입·지출예산서와 수입·지출결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표 8]과 같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장성군(○○○○과)으로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총 11차에 걸쳐 사단법인 명의로 지원받은 48,000,000원의 사업비가 법인 회계결산 및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아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표 8] 2022~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지급일	지급내역	지급액	채주
계		11차	48,000	
2022년	2022.05.03.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비 지급(1차)	3,520	사단법인 ○○○ ○○○○ (대표 ○○○)
	2022.06.15.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비 지급(2차)	2,080	
	2022.07.21.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비 지급(3차)	2,160	
	2022.10.25.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비 지급(4차)	5,120	
	2022.11.11.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비 지급(5차)	3,040	
	2022.12.22.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비 지급(6차)	5,680	
2023년	2023.04.26.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비 지급(1차)	3,840	
	2023.06.16.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비 지급(2차)	4,240	
	2023.09.27.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비 지급(3차)	2,000	
	2023.11.23.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비 지급(4차)	5,200	
	2023.12.27.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비 지급(5차)	11,120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 ○○○의 경우

지방○○주사 ○○○은 2021. 7. 19.부터 2021. 10. 4.까지 ○○○○과 ○○○○팀에서 유기동물보호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21년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에게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위탁사업비를 집행하고,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2021. 7. 19.부터 2021. 10. 4.까지 ○○○○과 ○○○○팀에서 유기동물보호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수탁자 ○○○가 위탁사업비 중 일부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구비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부실하게 제출되었는데도 단 한 차례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하는 등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탁자의 위탁사업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2022. 1. 12.부터 2022. 9. 29.까지 ○○○○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동물보호시설 전체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농지법」 등을 위반한 불법건축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또한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않아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을 부적정하게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2022년 동물보호센터 명의 계좌로 입금된 운영비 등이 소속 직원(○○○)과 위탁사업과 관련이 확인되지 않은 신원불명자들과 지속적으로 입·출금 거래되고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하는 등 민간위탁사업 지휘·감독 및 정산검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나. ○○○의 경우

지방○○주사보 ○○○은 2023. 9. 25.부터 현재까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24년도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자 공모 절차와 민간위탁자 선정심의회 선정심의 절차없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탁받은 자(○○○)에게 2024. 3. 28. 감사일 현재까지 위탁사업비 73,400천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또한 2023년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과 관련 운영비 및 인건비, 출장비 등의 예산편성 및 지출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 방식대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고, 정산검사 과정에서 지출 증빙서류 일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부실하게 제출되었는데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하는 등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다. ○○○의 경우

①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업무 처리 부적정

지방○○주사 ○○○은 2023. 9. 25.부터 현재까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업무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담당자 ○○○이 현안 업무 추진 등으로 위탁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업무를 대행하면서 2023년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비의 예산편성 및 지출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방식대로 부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편성된 예산을 지출하였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사 과정에서 지출 증빙서류 일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부실하게 제출되었는데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하였으며, 2024년도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자 공모 절차와 민간위탁자 선정심의회 선정심의 절차없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예산을 집행하였는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② 201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지방○○주사 ○○○은 2020. 7. 1.부터 2021. 7. 18.까지 ○○○○○과에서 201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지방○○주사 ○○○은 2021. 4. 27.부터 2021. 6. 18.까지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반환 통지 등을 하면서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 272,070,000원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71,200,000원을 부당하게 통지하였다.

또한 2021. 2. 18. 전라남도의 2020년 장성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통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금 72,689,910원은 [표 9]와 같이 기계장비 구입으로 33,900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2021. 4. 1. 부가가치세 환급금 사용 승인하여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표 9] 부가가치세 환급금 부적정 사용 명세

(단위 : 원)

환급자	환급일자	환급금액	환급 계좌번호	환급금 사용내역
○○○○ 영농조합법인	2020.02.28.	72,689,910	○○은행	① 기계장비구입 33,900천원 - ○○○(주) 야채전처리 외 기계 중고구입 ② 기계구입 후 나머지 잔액은 운영자금으로 사용

자료 : 장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장성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양정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자격 없는 자와 민간위탁 추진, 민간위탁사업 관리 소홀로 횡령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방치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보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장성군수는

- ①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자격 없는 자와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추진, 민간위탁사업 관리 소홀로 횡령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방치하고,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 회수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을 중징계하며, 자격 없는 자와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추진, 민간위탁사업 관리 소홀로 횡령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방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을 중징계하고, 지방○○주사보 ○○○을 경징계하며,(징계)
- ② 유기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총괄 및 담당한 업무 관련자로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지도관 ○○○, 지방○○서기관 ○○○, 지방○○관 ○○○, 지방○○사무관 ○○○, 지방○○사무관 ○○○, 지방○○

○주사 ○○○, 지방○○주사보 ○○○, 지방○○서기보 ○○○을 훈계하고,(훈계)

③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위탁사업비 지출 증
거서류가 없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하며,(시정요구)

④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지휘·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
행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기관경고)

⑤ 위탁사업비 목적 외 사용 및 사업과 관련 없는 자에게 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사업비 횡령이 의심되는 수탁자(○○○)와 종사자 및 신원불명자 등에 수사의뢰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수사의뢰)

[별표 1] ~ [별표 10] 생 략